

서울고등법원 2016. 8. 26 선고 2016나2008105 판결 [주식 매매대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결 2016. 7. 15.

판결 선고 2016. 8. 26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가합59449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다음 행에 "[한편,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,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(갑 제2, 3호증의 각 1) 말미에 '위 거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 2개 법인의 대표이사 A이 이를 보증하며, 이에 대한 절차 및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 계약조건대로 보증인 A이 무상으로 보증인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다.'고 기재되어 있듯이 원고는 양도인이 아닌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각 거래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이고, 원고 개인 소유 주식은 양도대상 주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, L와 J이 Ⅰ 주식에 대하여 가지는 최종 지분율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Ⅰ 총 주식수의 1%인 각 100주가 아닌, Ⅰ의 증자 이후 총 주식수의 1%인 각 353주인 점(갑 제10호증) 등에 비추어 보면,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양도인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회사이고, L와 J은 원고 소유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회사의 증자절차를 통하여 각 1%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.]"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, 제1심 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인겸, 판사 하상혁, 판사 신종오